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협력 추진시 외교부장관의 협조 근거 마련〉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8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제협력 추진시 외교부장관의 협조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24.
3.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제협력 추진시 외교부장관의 협조 근거 마련

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 사업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생략)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이 경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 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외 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6조제2항1)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외국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내기술 수출 또는 국외기술 도입 촉진,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은 단순한 기술거래를 넘어 시장 진출 시 대상 국가의 정책, 법률, 산업구조, 시장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이나 정보공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협력 추진시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보유한 정보력, 교섭력, 현지 협력 기반 등의 외교 역량을 전 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속·정확한 현지 정보의 확보와 파트너십 형성 등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다만, 재외공관 등의 현지 사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협조와 관련된 의무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외교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나, 관계중앙행정기관(17개 기관)과 현행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련 사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중복·상충되는 협조 요청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기술²⁾과 관련된 국제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교부장관의 협조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7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